〔 노사합의서 〕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5조(제도적 보완)에 근거하여 부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 이라 한다)은 2022년도 노사한마음협의회 임시회의(2022.04.18.)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노사는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제도와 관련, 2020년 4/4분기 노사 합의사항(2020.12.24.)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임금피크제 감액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구 분	정년 잔여기간(감액차수)		
	3년(1차)	2년(2차)	1년(3차)
현 행	8%	12%	16%
2020. 4/4 합의(안)	1%	2%	3%
변 경	4%	5%	7%

나. 임금피크제 감액비율에 따라 임금이 축소되는 만큼 근무시간을 단축한다.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4. 18.

부 천 도 시 공 사
사장 직무대행 김 창 형
서명 김창형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위원장 박 만 호
서명 박만호

〔 노사합의서 〕

부천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(이하 “노동조합” 이라 한다)은 2022년도 2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2.06.29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「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직무수행태도 평가기준」 중 근무상황부 사후결재로 인한 감점 적용시 개시시각 이전 신고한 증빙자료(유선, 문자, SNS 등)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점대상에서 제외하며, 2022년 하반기 근무평정시부터 적용한다.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8. 30.

부 천 도 시 공 사	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사장 직무대행 김 창 형	위 원 장 박 만 호
서명 김창형	서명 박만호

〔 노사합의서 〕

부천도시공사(이하 "공사" 라 한다)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(이하 "노동조합" 이라 한다)은 2022년도 3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2.09.29.) 및 4/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(2022.12.30.)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취업규정 제32조(특별유급휴가)의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자녀돌봄휴가	2일(3자녀 이상 3일)	2일(2자녀 이상 3일)
유산 또는 사산휴가(신설)	-	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부여(신설)

2. 공사는 직원 복지를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정부장려금을 활용하여 2023년 '함께해요 우리가족' 은 1인 15만원을, '자율체험(프리데이)' 는 1인 4만원을 지원한다.

3. 제2호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內 참여하는 경우 1일에 한하며, 출장명령서를 사전에 득한 후 참여한다.

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1. 11.

부 천 도 시 공 사
사 장 원 명 희

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
위 원 장 박 만 호